

성평등하고 안전한 학교,

교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온라인 신고센터
교육부 홈페이지
→ 민원
→ 교원성폭력신고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

117

교육부
전화 신고센터
02.6222.6060





- ① 성 관련 비위 유형 및 사례
- ② 성 관련 비위 발생 시 처리 절차
- ③ 성 관련 비위 교원 징계 및 처리



성 관련 비위 유형 및 사례

① 성 관련 비위 유형 및 사례



① 성 관련 비위 유형 및 사례

비슷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비위 유형

성폭력

- ◆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 관련 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강간 등 성폭행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추행을 의미
- ◆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음화 소지·반포, 공연음란 등 포함

형사처벌

사례1

A학교 B교사가 학생들에게 “원조교제 할래?” 등의 발언을 해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시켰다면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에 해당되어 성폭력으로 처벌 가능(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

사례2

C학교 교장이 부장교사 워크숍에서 여교사가 거부하였으나 강제로 몸을 껴안는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되어 성폭력으로 처벌 가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위반)

성매매

-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① 성 관련 비위 유형 및 사례

비슷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성범죄는 아니지만 징계 대상이 되는 성비위 유형

성희롱

- ◆ 행위자가 성적인 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을 의미
-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등에서 권력의 차이로 발생

사례1

A학교 교장이 기혼 여교사에게 '애인 있느냐' 라고 물어 해당 여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

사례2

B학교 남자 교감이 미혼 여교사에게 'A컵이냐, B컵이냐'고 물어 성적 굴욕감을 유발 시켰다면 성희롱에 해당

징계사유
+
국가인권위 조사
(해당기관에 관련자
징계 권고 등 조치)

기타 성비위

- ◆ 불륜 등 기타 부적절한 관계 등

징계사유



2

성 관련 비위 발생 시 처리 절차

② 성 관련 비위 발생 시 처리 절차

교원 성 관련 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 상시 운영 센터

국번없이 117

문자 신고 #117

117chat 앱 이용 가능



교육부 전화 신고센터

02-6222-6060

주중 주간 운영(09:00~18:00)



교육부 온라인 신고센터

홈페이지

민원

교원성폭력 신고



② 성 관련 비위 발생 시 처리 절차

성 관련 비위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교육부 전화 및 온라인 신고센터('15. 9월 중 구축 예정)

② 성 관련 비위 발생 시 처리 절차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입니다.

학교

- ✓ 담임해제
- ✓ 수업참여 배제 등
1차 격리조치

학교내 성고충상담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담임해제 · 수업참여 배제 등 시행



교육청

- ✓ 직위해제 등 조치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에 구축된
교권보호센터(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



3

성 관련 비위 교원 징계 및 처리

성폭력 교원은 교단에서 원천 배제 됩니다.

- ◆ 학교내 성 관련 비위 사안 은폐시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되고,
징계감경 제외 사유가 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15. 8. ~



- ◆ 국가공무원법 개정
완료, 사립학교법

개정안 '15. 7. 국회 제출

- ◆ 성범죄로 감사원·검찰·경찰의 수사·조사를
받기만 해도 즉시 직위해제됩니다.

③ 성 관련 비위 교원 징계 및 처리

성폭력 교원은 교단에서 원천 배제 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시행,
'15. 4. 9

- ◆ 모든 성폭력,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최소 해임됩니다.

- ◆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제11조제5항을 위반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군형법」 제92조부터 제92조의8 까지의 죄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15.4. 국회 제출

성폭력 교원은 교단에서 원천 배제 됩니다.

- ◆ 미성년자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 되면 교원자격도 박탈되고 재취득도 불가능해집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제11조제5항을 위반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15.10.국회제출



- 공무원연금법

인사혁신처와 개정 협의

- ◆ 성 관련 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도 연금이 삭감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성비위로 징계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1/8 ~ 1/4 삭감

참고_공무원 징계 개요

종 류		내 용
중징계	배 제 징 계	파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퇴직급여액 1/2 감액(단,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1/4 감액), 퇴직수당 1/2 감액 • 5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해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의 1/4 감액(단,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1/8 감액) • 퇴직수당 1/4 감액 • 3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 •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보수의 2/3 감액
	정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정직 기간동안 보수의 2/3 감액
경징계	감 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1/3 감액
	견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성관련
비위

성범죄

성폭력

성폭행(강간 등)
성추행(강제추행 등)

성매매

- 학교 내 성비위 은폐시 최고 파면
- 성관련 비위로 해임처분시 연금 삭감 (법개정 추진 예정)

- 성범죄로 수사·조사 통보시 즉시 직위해제
-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장애인 성매매 시 최소 해임
- 모든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확정시
→ 당연퇴직, 교원자격 박탈

성희롱

성적인 언동 등

- 징계사유 + 국가인권위 조사

기타 성비위

불륜 등 부적절한 관계

- 징계사유

< 공무원 징계 개요 >

• 징계별

중징계		경징계	
배제징계	교정징계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 cf) 형사벌 :
금고- 벌금-구류-과료 등

성평등하고 안전한 학교

희망

양성
평

